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20. 한일용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2020. 10. 20.
- 다. 상정일자: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0.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한일용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 삭제(안 제8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임.
 -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 삭제에 관한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민간단체인 자율방범대와 그 연합회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 조직에 신고의무 및 기록·보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